

울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270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지환, 허순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8.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6. 10. 접수 제860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23. C에게 24,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C은 위 대출금 납입을 연체하였고, 2021. 11. 3. 기준 23,154,300원의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다. 그런데 C은 2019.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28,674분의 1,323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5. 2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채무자인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C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8,674분의 1,323 지분과 강원도 고성군 D건물 E호 중 150분의 1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1㎡당 6,560원이고, 위 콘도미니엄 지분가액이 70만 원인 점 등을 근거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C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나머지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형석

별지